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정 2006. 12. 1
개정 2008. 2. 19
개정 2018. 4. 18
개정 2019. 1. 25
개정 2020. 8. 6.
개정 2023. 9.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정관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 ①평의원회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 재학생 중 대표
4. 동문 1인 : 동문대표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②제1항 제1호는 전임교원 전체 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총장이 임명하며, 제2호는 전체 직원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8. 6.)

③제1항 제3호 내지 4호는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8. 6.)

④제1항 제5호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각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8. 6.)

⑥제 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추천 당시 차순위의 후보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단, 차순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신설 2023. 9. 18.)

제3조(임원)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8. 6.)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삭제 2019.1.25.)

③의장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일정과 장소, 안건에 관하여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과 장소, 안건명만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제6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대학평의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6.)

②위 1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제9조(개방이사과 감사의 추천) ①대학평의원회는 학교법인 청강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과 감사의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①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 공개는 해당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대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6.)

④위 3항의 회의록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아래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위 4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우리대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20. 8. 6.)

제13조(간사)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면하며,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예산지원)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정개정) ①이 규정의 개정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규정관리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20. 8. 6.)

②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6.)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